C - 34 - 2011

## 소규모 철근콘크리트 교량공사 거푸집 동바리 안전작업 지침

## 1. 목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 27조(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) 규정에 의거하여 거푸집 동바리의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규모 철근콘크리트 교량의 거푸집 동바리 안전작업지침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## 2. 적용 범위

이 지침은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하는 소규모 철근콘크리트 교량공사에 적용한다.

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소규모 철근콘크리트 교량"이라 함은 지간 길이가 짧은 철근콘크리트 교량으로서 거푸집동바리를 설치하여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하는 슬래브교, 라멘교, T형교 등을 말한다.
  - (나) "거푸집 동바리"라 함은 거푸집 및 장선·멍에를 소정의 위치에 유지 시 키고 상부하중을 하부구조에 전달하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.
  - (다) "장선"이라 함은 거푸집널을 고정하고 상부하중을 멍에에 전달하는 부재를 말한다.
  - (라) "멍에"라 함은 장선을 지지하고 상부하중을 하부구조에 전달하기 위하여 장선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부재를 말한다.